

2004년 도
예산안심사 착안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

- I. 일반적인 심사방향
- II. 예산안 편성기준
- III. 예산 총칙
- IV. 세입예산안
- V. 세출예산안
- VI. 계 속 비
- VII. 명시이월비
- VIII. 삭감된 예산
- IX.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I. 일반적인 심사방향

1. 지방재정 여건의 고려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것은 없는가
- 국가보조사업(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여건상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가
- 국가재정지원(도재정지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타 자치단체와 공동부담을 전제로 한 예산은 없는가
- 모든 투자예산사업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가
-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대규모사업을 예산에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지방채가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남발되고 있거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에 지방채를 기채하는 것은 없는가
-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가

2. 국가정책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의 부합 여부

- 국가 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제 및 재정정책 등 각종 정책과 상반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가
- 당해 자치단체의 각종 장·중·단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상반되는 것은 없는가
- 정부의 물가정책 등과 상반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가
- 예산 내용중에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3. 재원배분의 형평성 여부

- 예산(특히 사업예산)이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 지역간, 부문간에 할당식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가
-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원배분은 적정한가
-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과의 재원배분은 적정한가
-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소모성 경비)의 증가가 과대한 것은 아닌가
-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또는 특별회계간에 동일 목적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경비지출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없는가
-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경우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배정하였는가

4.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여부

-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는 없는가
-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가
-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각종 기구 및 공무원의 감축과 업무기능의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로 재원을 절약할 여지는 없는가
- 예산이 각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편성하였는가
- 우선순위가 낮고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 하는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가(예산의 절감 노력)
- 자체재원 조달능력이 없는 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출을 중단하거나 대축 축소 조정할 방안은 없는가(수도물, 하수도, 쓰레기 수거 등)
- 매년 계속하여 불용되는 항목의 예산을 매년 동일액수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사업의 성과가 저조함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예산의 상호 보완성 및 연관성이 부족하여 예산집행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선심성 예산(세출항목과 사업)은 없는가

5. 지방의회와 상호 협조관계 여부

- 의회에서 결산심의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예산이 조례의 제·개정 등을 전제로 하여 편성된 것은 없는가 (조례의 제·개정안은 예산안보다 먼저 제출되거나 동시에 제출되어야 함)
- 금년도 예산 도는 추경예산 심사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없는가
- 본회의 및 상임위 질문 답변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II. 예산안 편성기준

1. 편성방향

- 지방재정 여건이 변화하였음에도 예산편성방향이나 기준이 지난해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예산편성기본방향이나 지침에 불합리한 것은 없는가(편성기준의 객관성과 타당성 검토)

- 예산편성의 중점목표가 부적절한 것은 없는가
- 예산 편성방향이 지방재정정책(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재정정책과 상반되는 것은 없는가
- 예산편성기준에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한 것은 없는가

2. 기준단가

- 건설노임, 수수료 등 각종 단가가 일정한 기준없이 정해지거나 비현실적인 것은 없는가
- 수당, 피복비, 급량비, 인건비 등이 민간부문의 단가와 비교할 때 적정한가
- 연료비, 차량비, 유가 등 환율관계의 단가는 현실성이 있는가
- 각종 단가는 물가인상을 등 지난해의 경제실적과 다음해의 경제예측을 감안하고 있는가

3. 예산과목의 적정성 여부

- 예산과목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 과목별 분류개념이 불명확한 것은 없는가(과목해소 참고)
- 예산과목 설정에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없는가
- 예산과목에 통일성이 결여된 것은 없는가
- 예산과목이 너무 많고 불분명하여 통·폐합할 것은 없는가
- 예산과목이 너무 세분되어 있음으로서 예산집행의 효과 측정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는 없는가

III. 예산총칙

- 각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채발행(장기차입금 포함) 한도액, 채무부담한도액의 규모와 그 용도는 타당한가

- 지방채발행 한도액, 채무부담 한도액 등이 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의 내용과 불일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지방채 발행의 경우 지방채 발행조건과 규모, 그 사업은 타당한가
- 이용범위가 너무 과대하여 집행부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거나 이용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는 없는가

IV. 세입예산안

1. 총 괄

- 세입의 증감 원인은 무엇이고 그 사유는 타당한가
- 세입추계가 지역경제상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있는가
-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가
- 세입추계는 적정한가(최근 3년간 세입결산 결과 및 증가추이 반영)
-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공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과년도 수입(이월금)은 수입으로 적정한 것인가
-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수입 가능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가

2. 지방세 수입

- 세수추계의 증감원인은 무엇이고 그 사유는 타당한가
- 지방세의 세수추계는 정확하고 무리는 없는가(최근 3년간 세입결산 결과를 평균하고 세수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세수액을 추정함)

3. 지방교부세(정수교부금)

- 지방재정계획을 감안할 때 당해 단체의 지방교부세의 예산계상액(내시액)은 적정한가(규모가 비슷한 타 단체와 비교)
- 특수사정이 발생했음에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4. 분담금과 부담금 수입

- 부담금(분담금)은 수익의 한도내에서 적정하게 추산되고 있는가
- 분담금 조례로 징수해야 할 것을 기부로 한 것은 없는가
- 분담금 조례는 잘 정비되어 있는가
- 부담금(분담금)의 산정근거 및 금액이 부적정한 것은 없는가

5. 사용료 및 수수료·사업장 수입

- 사용료 및 수수료의 추계가 과거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과대·과소 한 것은 없는가(3년간 정도의 수입평균)
-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준이 타 단체와 비교하여 과중한 것은 없는가
- 각 사업장의 수입이 사업실적 및 계획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과소 하게 계상한 것은 없는가
-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준은 당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할 만한 것인가(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의 타당성 검토)
-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수입은 적정하고, 부실화되거나 적정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사업의 사유는 무엇인가

6. 국고(시·도)보조금(내시액)

- 국고보조금(시도보조금)의 신청이 우선순위에 맞게 되어 있는가 (보조금 신청자료와 내시된 자료 비교)
- 단체장이 신청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국고(도) 보조사업은 없는가, 있다면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 보조금 내시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없는가
- 동일 사업에 대해서 타 단체와 비교하여 국고(도) 보조금액이 과소한 것은 없는가

- 사업의 규모나 성격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액(도보조금액)이 과소한 것은 없는가
- 국고보조금(도보조금)이 국회나 도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사업의 대책은 서 있는가
- 시급한 사업임에도 국고보조금(도보조금)사업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가
- 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7. 지방양여금(내시액)

- 타 단체에 비하여 지방양여금액이 과소한 것은 아닌가
- 지방양여금 산정자료에 각 양여금 사업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 졌고 양여금을 교부받기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전년도와 비교하여 양여금 총액, 각 부문별 양여금의 증감원인 및 그 사유는 타당한가

8. 재산수입

- 구체적인 재산매각 계획이 없이 재산매각 수입재산을 대폭 증액 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공공재산의 임대료는 민간 임대료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 불용물품과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오히려 매각이 효과적인 것은 없는가
- 재산매각 가격의 추계가 시가와 비교하여 과다·과소한 것은 없는가
- 재산매각 대상 중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없는가

○ 승인대상(중요재산)

- 취 득 : 1건당 1억원이상 이거나 1천㎡이상
- 매 각 : 1건당 2억원이상 이거나 2천㎡이상

9. 지 방 채

-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의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은 없는가
- 지방채를 기채하려는 목적과 지방채로 시행할 사업은 적정한가
- 경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없는가
- 효과가 낮은 사업을 기채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 외국차관 또는 전대차관수입(국외차입금)의 규모는 적정하고 목적은 타당한가
- 지방채의 기채규모, 조건, 상환기간 등은 적정한가(장기차입금 포함)
- 당해 사업을 지방채로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
- 특정사업을 지방채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 기채가 불허되는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 지방채 비율(총세입에서의 비중, 주민 1인당 부담액 등)의 추이를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그 규모는 적정한가
- 지방채 기채대상 중 지방채발행계획에 의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없는가
- 지방채의 상환계획은 적절한가, 무리한 기채는 아닌가
-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갑자기 지방채로 실시하려는 것은 없는가

10. 특별회계 세입

- 특별회계 각종 수입의 증감여부 및 그 사유는 타당한가
- 사업수입과 영업수입이 증감된 경우에 규모는 적정하고 그 사유는 타당한가
- 전년도 이월금은 적정하고 정확한가
-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과거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과다·과소 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가
- 일반회계 및 각종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의 규모와 내용은 적정한가

- 각종 재산의 매각수입 중 특별회계에 필요한 재산임에도 매각하려는 것은 없는가
-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 세입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입을 추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경영개선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가

11. 기 타

-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회보(공보, 반상회보 등)에 민간 광고를 유치하여 수입을 증대할 방안은 없는가
-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버스승강장 등)에 광고를 유치하여 수입을 증대할 방안은 없는가
- 2개년도에 걸쳐 세입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없는가
- 이월금이 과대·과소하게 계상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V. 세출예산안

1. 총 괄

- 전년도에 비하여 세출예산이 증감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 지출내용이 지방재정법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가(대학지원 등)
- 규모 및 지역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 비교할 때 무리한 지출은 없는가
- 세출예산의 실제내용이 예산편성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가
- 세출예산이 일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가
- 소모성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사유는 타당한가
- 소모성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 노력은 하고 있는가
- 소모성경비는 결산상의 집행실적, 물가인상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는가

-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가
- 각 항목의 세출예산규모가 사업목적 달성이나 기대하는 행정효과를 거두는데 과다·과소한 것은 아닌가
- 세출예산에 지방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동일사업 또는 경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 각각 계상되어 있어 사업의 집행효과나 예산집행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특별회계(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할 사항이 일반회계(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가
- 같은 경비를 이중으로 각 과목에 분산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가
- 특정 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상당액을 다른 항목으로 이·전용시키면서 매년 같은 액수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다른 항목에 계상되어야 할 지출사항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 특정 사업의 추진이나 사업량 확대를 위해 연례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하는 사업이 당해연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가
-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가
- 소규모사업으로 분산투자하는 것보다 집중 투자하여 영세한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사업예산은 없는가
- 중기재정계획과 세출예산간에 상호모순이 되는 것은 없는가 (사업별로 비교함)
- 중기투자계획과 예산의 세출내용과 상이한 것은 없는가 (사업별로 비교함)

2. 인 건 비

- 정원의 증감사유(연도중 증감, 내년도 증감예상)는 타당한가
- 소관업무를 감안할 때 직원 수가 과다·과소한 것은 없는가

- 별도 정원이 과다한 것은 없는가, 별도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는가
- 편성기준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없는가
-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규모가 비슷한 타 단체와 비교하여 과다한 것은 없는가
- 일용인부의 수 및 이에 대한 예산이 타 단체와 비교하여 과다한 것은 없는가
- 일시 고용인부로 충분한 것을 상용인부로 채용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인건비의 절감 편성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가
- 명예퇴직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 각종 수당의 증감원인 및 그 사유는 타당한가
- 유사·중복기능 및 기구의 통·폐합 등으로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3.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일·숙직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택비

가. 기준경비의 중복·과다여부

- 개별 「목」 예산이 유사하거나 또는 중복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용하여 지출하면서 해외출장 여비를 매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각 관서간에 경비가 불균형한 것은 없는가

- 각 소관간, 단위 관서간 등급화는 적정한가(타 단체와 비교)
- 자산취득비가 과다한 것은 아닌가
- 불필요한 예산 항목은 없는가
- 각 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가

나. 기준경비의 집행실적 및 계상의 적정여부

- 각종 기준경비가 집행실적(결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가
-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직급별 지급대상은 적정한가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거나 일정한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상된것은 없는가
- 특정 업무수행(세무, 감사, 소방, 단속업무 등)을 위한 업무가 아닌데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 불필요한 간담회·협의회가 너무 많거나 통폐합 할 것은 없는가
- 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비교하여 기관운영경비가 과다·과소한 것은 없는가
- 별도정원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기관운영경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계상내역이 불합리한 것은 없는가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부족하여 매년 타 항목에서 이·전용하여 사용하면서도 매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가

일반업무추진비의 내역 및 내용

일반업무추진비(203)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203-01)

-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

●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203-02)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정원에 따라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액에 따라 별도 계상(정원가산 특수활동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203-03)

-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편성

● 기타 업무추진비(203-04)

① 직책급 업무추진비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지급대상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 지급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함

②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지급
단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

③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제잡비,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

④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 감사, 세무, 소방 등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매월
지급),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

- 차량비, 선박비, 연료비 등의 적용기준단가는 적정한가,
그 기준일수의 적용은 적정한가(타 단체와 비교)
- 관용차량의 증가사유는 타당한가
- 관용차량의 소형화 및 감축화 추진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가
- 각종 기준경비의 지출기준(일수·대수) 및 지출범위를 감축할
여지는 없는가
- 공무원 위탁교육의 실시기준이나 예산이 과다·과소한 것은 아닌가
- 년 1회 또는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수당을 매년 편성하고
불용함에도 또다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없는가
- 직원능력개발비(사설학원 수강료 보조비)가 타단체와 비교하여
과다·과소하거나 그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닌가(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자체교육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가)

다. 수용비의 적정여부

일반수용비 : 필기구 등 사무용 잡품비, 인쇄물제작비, 현수막 등 상패제작비,
광고료, 소규모수선비, 신문·도서구입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급량비, 재료비, 차량·선박비 등

- 각종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등의 증가여부 및 그 사유는 타당한가
- 각종 인쇄물 제작 필요성 및 규모는 적정한가
- 각종 사무용품비가 증가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각 부서 단위와 타단체와 비교)
-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품 등이 있음에도 다시 구입하는 등
불필요한 경비가 계상된 것은 없는가
- 준내구성 사무용품인데도 동일한 업무조직 단위에서 매년 구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라. 여비(국내·국외여비·외빈초청)

- 국내여비의 증감여부 및 그 사유는 타당한가
- 국내여비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가
- 일용직(예:청경)등의 국내여비가 계상된 것은 없는가
- 필요하지 않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없는가
-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 공무원 해외연수(단기 및 배낭여행) 또는 시찰예산의 증감여부 및 그 사유는 타당한가(규모 및 횟수 등을 감축운영할 여지는 없는가)
-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상호방문활동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 단체장의 해외출장 횟수나, 수행원 수가 과다한 것은 없는가
- 각종 형식적이고 효과도 없는 해외연수, 출장, 방문, 시찰 등을 폐지·축소할 여지는 없는가
- 외빈 초청의 경우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횟수나 규모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마. 행사지원비

- 행사개최의 효과가 없거나 전시성격이 있음에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행사가 너무 호화스럽게 치루어지는 것은 아닌가(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의 과다 여부)
- 행사지원을 위한 초청장·현수막·상패 등의 제작예산이 과다한 것은 아닌가
- 행사장소를 외부시설을 임차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시설의 활용으로 임차료 예산을 절감할 필요는 없는가

사. 학술용역·전산개발비

- 자체공무원을 활용해도 충분한 연구를 외부에 맡기는 것은 아닌가
- 학술용역의 효과나 활용도가 낮음에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학술용역의 제목(분야)가 당해 자치단체에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가
- 전산(S/W) 개발을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는 없는가
- S/W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개발한 S/W를 구입(또는 공동개발)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는가

4. 기관운영경비

- 공보활동비가 과다한 것은 아닌가(타 단체와 비교)
- 각종 현황판, 입간판 교체 및 유지비가 과다한 것은 없는가
- 주민제도용 각종 신문 및 잡지구입 예산이 타 단체와 비교하여 과다한 것은 없는가
-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대상, 목적, 예산액은 적정한가
- 매년 청사 및 관사임대료 예산이 과다하여 청사 및 관사의 구입이나 신축이 더 경제적인 것은 없는가
- 공무원의 고유업무임에도 원고료를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피복비 및 급량비의 지급대상이 과대·과소한 것은 없는가
- 특수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의 산출기초가 부적정한 것은 없는가
- 사업추진상 또는 주민제도용으로 긴요하지 아니한 간행물의 발행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가
- 각종 기념행사·체육행사 경비 등 전시적인 소모성 경비는 없는가
- 각종 기념행사·예술제 등 문화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거나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는 예산을 일부 보조하여 예산을 절약할 방안은 없는가
- 정수로 배정받지 아니한 물품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는가

- 구입할 물품이 에너지절약 시책과 무관하게 에너지과소비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5. 사 업 비

가. 총액예산

- 총액예산(예 : 도로개설 및 포장, 하천개수, 경지정리, 교량건설 등)의 편성사유는 타당한가
- 총액예산의 산출내역 및 집행기준은 적정한가
- 총액예산사업이 당해 자치단체의 연차계획 또는 중기재정계획과 불일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투자심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인가

나. 주요사업

(1) 각종계획과의 상호관련성 여부

- 각종 사업이 당해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이나 재정계획과 상반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지방채로 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기채사업으로 적정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과 「지방채발행계획」의 범위내 사업인가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관련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은 계상되었는가(연쇄적 효과가 있는 사업의 경우 동시 추진 검토)

(2)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 여부

-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없는가(10억 이상)
- 사업의 효과성이 낮고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을 계속 계상한 것은 없는가

- 각 사업간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가
-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사업비중 민간분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하여 소규모 사업이 소외된 것은 없는가
- 투자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연례적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동일 사업에 대한 재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二元化)되어 있어 예산집행 효과가 저하될 것은 없는가

(3) 편성예산액의 적정성 및 지역간 균형 여부

- 개개 사업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가
- 소모성경비를 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없는가
- 각 주요사업의 선정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확정하였는가
- 사업추진을 위해 계상되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행사경비, 격려비 및 격려품, 간담회비, 사례금, 접대비 등)가 전년도에 비하여 큰폭으로 증가하거나 그 전체규모가 과다한 것은 없는가
-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계상에 통일성과 산정 기초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없는가
- 무모하게 지방채사업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사업비중 공통경비가 각 사업간에 불균형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 사업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이월을 예상하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없는가
- 사회보장 등 이전적경비(예 : 보조)의 증대로 인하여 향후 재정의 경직도가 심화되고 추가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우려는 없는가

- 보조 등 각종 예산지원이 특정 부분·지역·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예산 집행 효과가 불균형하게 될 우려는 없는가
- 포괄사업비를 계상하는 경우 그 대상 및 규모, 예산액은 적정한가
- 추후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여 사업비의 소요액 일부만 계상하거나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은 없는가

(4)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 사업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용지보상의 협의곤란,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곤란, 주민들의 반대 등이 충분히 감안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수립되었는가
- 완공위주가 아닌 선심성, 동시다발적 사업의 추진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우려는 없는가
- 각 사업비의 연내집행이 어려운 것은 없는가
-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중단될 우려는 없는가

(5) 사업의 기능분담 적정성여부

- 사업을 민간위탁, 민영화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여지는 없는가
- 사업중에 자치단체가 개입하거나 시행하기에 부적정한 것은 없는가
 - 사업중에 민간단체나 기업체, 주민의 부담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 사업중에 제3섹터를 활용·추진하여 재원을 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부담할 여지는 없는가

다. 장기계속사업

- 계속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당초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 계속사업중에 당해연도의 소요재산(내자·외자) 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 차후연도의 사업비에 대한 보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단 사업을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사업은 아닌가
- 장기계속사업의 사업비중 일부가 매년 명시 되고 사고이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시행분의 예산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 사업시행중에 용지보상 협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이 미비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과소하게 계상되었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그 대신에 다른 소규모 신규사업을 많이 계상하여 예산의 효과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가

라. 국고(도) 보조금 사업

(1)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은 적정한가
- 각종 보조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보조사업이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투자 효과가 저하되거나 재원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가
- 국고(도) 보조금 사업의 대상지역이 잘못 선정되었거나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과다·과소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 지역별, 부문별로 각종 보조사업의 사업량과 예산이 편중된 것은 없는가
- 도보조금이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간의 형평성, 투자효과, 자치예산 부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상되었는가

(2)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

- 각종 보조사업별로 국고보조율(도보조율)이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과소한 것은 아닌가(지방비의 부담분이 과다)
-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고유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자치단체의 부담을 전제로 중앙부서가 예산을 계상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없는가

마. 지방양여금 사업

- 지방양여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는가
- 지방양여금 사업이 각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되었으며 특정 부분에 편중된 것은 없는가
-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할 사업의 대상지역이 잘못 선정되었거나 사업규모가 과대·과소한 것은 아닌가
- 지방양여금 사업에 양여금의 부족으로 지방비의 부담이 과다한 것은 없는가(타 단체와 비교)
- 지방양여금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기간을 늘려 양여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지는 없는가
- 지방양여금 산정자료(단체장이 보고한 자료)와 실제 예산에 계상된 양여금 사업에 상이한 점은 없는가(지방양여금 산정자료와 예산서 비교)

바. 민간에 대한 보조금

- 각종 민간단체및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정한가
- 특정분야 및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인 경우 특혜시비의 우려는 없는가
-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보조 또는 보조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보조사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은 없는가

- 타 단체와 비교하여 각종 민간보조금의 총액, 각 보조대상 및 사업 내용은 적정한가
- 투자효과의 제고와 예산절약을 위해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가(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의 구분기준 명확여부)
- 보조사업중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는데도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투자효과가 없거나 부실화되고 있는데도 매년 보조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이 「단체장의 pool보조금」, 「각종 기금」의 지급이나 각종 행정지원과 중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보조금을 지급받는 각 단체의 사업계획은 당해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사. 출자·출연

- 민간단체 및 기금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적정한가
- 특정분야에 대한 출자·출연은 적정한가, 특정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 각 단체에 대한 출자·출연예산 규모는 적정한가
- 출자·출연대상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사업의 투자효과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출자기관에 대한 법정자본금, 자본금 불입실적, 향후 투자재원 조달 방안 등은 적정한가
- 출자·출연받는 기관 및 기금의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예산서상의 출연금액이 출연받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불일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연구기관, 공단 등에 대한 출연금의 내역과 출연받는 기관의 사업 운영 계획은 적정한가

- 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출자)금의 산정기준은 타당하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은 없는가
- 출자·출연효과가 없거나 과소함에도 관례적으로 매년 출자·출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특정기관 및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출연이외에 다른 보조금 등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중복지원 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출연금과 보조금 비교

구분	근거 여부	용도지정여부	정산여부	비고
출연금	·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야함	· 사용용도 지정하지 않음	· 사후정산을 하지 않음	· 연구소등 출연 · 기금출연
보조금	· 반드시 지급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사용용도 지정하여 교부	· 반드시 사후 정산을 함(잔액반납)	· 사업, 민간단체에 재정지원을 위한 원조성격

아. 용역사업

- 용역사업의 대상은 적정한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가
- 각 용역사업의 용역비 규모는 적정하고 타당한가
- 용역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과소할 것이 예상됨에도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없는가
- 동일 목적의 용역사업을 매년 연례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자체조직이나 공무원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업무를 용역사업으로 하여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사업집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청소용역 등 소규모 용역사업을 매년 특정업체나 단체에게 주면서 용역비를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가

자. 홍보활동 및 행사비

- 각 기관별 부서별 간행물의 구독종류 및 소요예산은 적정한가
- 각 부서별 홍보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 홍보간행물의 종류 및 소요예산은 적정한가(타 단체와 비교)
- 각 홍보물의 내용이 유사하여 통폐합 할 필요는 없는가, 홍보물의 배포 범위는 적정한가
- 단순한 업무의 홍보를 위한 영화제작이나, 긴요하지 않은 보고용 슬라이드나 VTR을 제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구체적인 홍보활동이나 홍보사업이 각 부서간에 중복되고 과다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가
- 군정 홍보 팸프렛이 조잡하고 산만하여 홍보효과도 없는데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각종 홍보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사업화 할 필요는 없는가 (호화스런 홍보물 여부 검토)
- 각종 행사의 필요성은 적정한가
- 각종 행사의 구체적인 사업이 전시성이거나 소모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폐지·축소할 여지는 없는가
- 각종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약할 방법은 없는가
- 각종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주최하거나 민간단체로 위탁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약할 여지는 없는가
- 각종 행사가 과다하여 통·폐합 할 행사는 없는가
- 각종 행사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전시용은 아닌가
- 특정 민간단체의 행사비지원의 경우 특혜 시비의 우려는 없는가
- 행사의 효과가 저조한데도 소모성 행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가

차. 융자사업

- 융자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은 적정한가
- 융자금액이 과소하여 융자효과가 저조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의 구분기준은 적정한가(타 단체와 비교)
- 융자금의 상환기간, 이자 등 융자조건은 적정한가(타 단체와 비교)
- 융자사업의 결산실적이 융자예산에 반영하고 있는가(일정한 융자사업은 융자조건의 까다로움, 융자액 소액, 홍보부족 등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기한도래 융자금 중 회수되지 않고 있는 융자금은 어느 정도이고 회수대책은 무엇인가
- 융자사업의 대상에서 추가 또는 삭제할 대상은 없는가
- 융자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효과가 과소한 데도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융자지원 사업이 보조도 받고 있어 이중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가

카. 기타 사업

- 각종 단위의 세부사업책정이 과다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 관서운영비 성격의 예산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은 없는가
- 인건비 성격의 예산(예 : 복리후생비 등)을 사업비로 분류하여 책정한 사유 및 개선대책은 없는가
- 각종 단위의 세부사업 책정기준과 단가는 타당한가

6. 예비비

- 예비비의 규모는 적정한가(타 단체와 비교)
- 예비비가 전전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가
- 목적예비비의 설정은 타당하고 각 사항별 규모는 적정한가

- 부서별, 사항별로 경비소속가 명백함에도 예비비로 일괄 계상한 것은 없는가

VI. 계 속 비

1. 신규사업

- 계속비사업의 책정시 사전에 타당성조사, 우선순위, 투자효과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었는가
- 계속비사업이 중·장기재정계획 등과 상반되는 것은 없는가
- 계속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연부액, 연부기간은 적정한가
- 계속비사업의 집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 계속비사업과 장기계속사업과의 구분기준은 적정한가
- 계속비사업에 대한 재정조달계획이 타당성이 없어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중간에 중단될 우려는 없는가
- 대규모 계속비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등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는 없는가

* 계속비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해야함에도 계속비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차후년도 사업비에 대한 보장도 없이 일단 대형사업을 벌여놓고 보자는식(선심성 사업)의 예산편성이 아닌가를 검토함.

2. 계속사업

- 계속사업비의 총사업비, 연부액, 연부기간의 수정시 그 사유는 타당한가
-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계속비 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 계상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동일한 계속비사업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이중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재정조달계획의 차질로 계속비사업이 중단된 것은 없는가

VII. 명시이월비(결산 추경에 반영)

- 명시이월한 사유는 타당하고 그 예산내역은 적정한가
- 명시이월비가 한도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는가
- 당초 예산심의시 연내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라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은 없는가
- 연초의 추경 편성시 명시이월할 사업을 취소하여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할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안에 편성할 수는 없었는가
- 명시이월한 사업이 명시이월비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가
- 재원이 없음에도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유가 집행하려는 사업의 중단인가, 아니면 사업의 취소인가

VIII. 삭감된 예산(2002~2003년도)

가. 2002년도 삭감된 예산

(단위:천 원)

회계별	과 목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요구액	삭감액	승인액	사 유
	세세항	목					
일반 회계	자체 사업	민간 이전	21C 거창 발전연구회 지원	40,000	10,000	30,000	예산 과다 계상
일반 회계	자체 사업	민간 이전	공무원 친절도 평가	5,000	5,000	0	사업 필요성 재검토
일반 회계	지방 채 상환	차입 금 이자	차입금 이자상환	70,350	70,350	0	제3회 추경예산 반영
일반 회계	자체 사업	민간 자본 보조	양봉 채밀기 지원	16,000	10,000	6,000	단가 과다 계상

회계별	과 목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요구액	삭감액	승인액	사 유
	세세항	목					
일반 회계	자체 사업	민간 자본 보조	친적사육 법인지원	25,000	25,000	0	사업 필요성 재검토
일반 회계	자체 사업	민간 자본 보조	88고속도로 진입로 홍보물 설치	80,,000	80,000	0	사업 필요성 재검토
일반 회계	자체 사업	민간 자본 보조	구강보건 실 설치사업	30,000	30,000	0	제3회 추경예산 반영
일반 회계	자체 사업	민간 자본 이전	공무원친 절도 민간위탁 평가	5,000	5,000	0	사업시행여부 재검 토
"	자체 사업	민간 자본 이전	하성벌꿀 가공공장 증·개축 사업	32,000	32,000	0	민간의 고정자산 증 식에 소요되는 사업 비로 자체 조달 시 행이 타당함
"	기타	기금 전출 금	4-H 기금 출연	50,000	50,000	0	기금출연근거 조례 제정 후 지원함이 타당함
주차장 관리 특별 회계	자체 사업	민간 이전	견인대행 업체 손실보조	15,000	15,000	0	불법주차단속(견인) 강화로 손실 보전
일반 회계	축수산 관리 (민간 자본 이전)	민간 자본 보조	벌꿀가공 공장증설	85,000	35,000	50,000	양봉농가의 안정적 사양기반유지를 위 해 시설개선에 따른 최소경비인정으로 일부 삭감
특별 회계 (주차장 관리)	자체 사업	민간 이전	견인대행 업체 손실보조	15,000	5,000	10,000	견인에 따른 필요경 비중 최소한의 경비 인정하고 일부 삭감 (앞으로 더 이상 요 구는 절대 불가)

나. 2003년도 삭감된 예산

(단위:천 원)

회계별	과 목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요구액	삭감액	승인액	사 유
	세	항 목					
일반	자체사업	연구개발	거창군이미지 통일화개발	70,000	70,000	0	캐릭터사업 완료 후 추진 또는 통합 추진
일반	자체사업	민간이전	임의단체 보조금	173,000	24,000	149,000	거창사건유족회, 생활체육 활성화 자체 예산 확보
일반	자체사업	민간이전	향토민속자료 조사 지원	10,000	10,000	0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가능(이중계상)
일반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속농악육성 지원	15,000	15,000	0	사업 재검토
일반	자체사업	민간이전	국내외연극제 개최및 참가비지원	60,000	30,000	30,000	사업 재검토 (예산절감)
일반	자체사업	민간이전	극단입체 육성지원비	48,000	20,000	28,000	사업 재검토 (예산절감)
일반	자체사업	민간이전	전통혼례식지 원	10,000	10,000	0	사업 효과 미흡
일반	자체사업	민간이전	문화유적자료 조사지원	50,000	14,000	36,000	국고보조이중 지원
일반	자체사업	시설비	수송대야외무 대설치및 보수	60,000	30,000	30,000	1개소만 추진 (예산절감)
일반	자체사업	자본이전	향교화장실보 수	20,000	10,000	10,000	과다 책정
일반	자체사업	일반보상	훈련감독수당	3,000	3,000	0	사업 재검토
일반	자체사업	일반보상	활동비	4,800	3,600	1,200	사업 재검토 (과다책정)
일반	자체사업	민간이전	제2회 전국남녀공도 대회 지원	30,000	5,000	25,000	전년도 수준 동결
일반	경예산	보상금	모범음식점 레기용투지 쓰기 지원	9,600	9,600	0	사업 효과 미흡

회계별	과 목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요구액	삭감액	승인액	사 유통
	세세항	목					
일반	경상 예산	보상금	고객만족 베스트업소주 방기구	2,000	2,000	0	사업 효과 미흡
일반	자 사업	보상금	연중기획공연	200,000	50,000	150,000	전년도 수준 동결
일반	자 사업	시설비	문화센터음향 설비 보완	210,000	210,000	0	하자보수 완료 후 추진
일반	자 사업	시설비	문화센터 진출입계단 설치	173,740	173,740	0	하자보수 완료 후 추진
일반	자 사업	시설비	문화센터진 출입계단설 치부대비	1,260	1,260	0	하자보수 완료 후 추진
일반	자 사업	자산 취득	문화센터무대 조명기구입	33,600	33,600	0	하자보수 완료 후 추진
일반	자 사업	민간 자본 이전	하성벌꿀 포장재지원	70,550	40,550	30,000	예산 과다 계상
일반	자 사업	민간 자본 이전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	100,000	30,000	70,000	"
일반	자 사업	시설비 및부 대비	교량난간 조명등설치 공사	30,000 시29,676 부324	30,000 29,676 324	0 0 0	항구적인 사업 계획 재검토
일반	보조 사업비	시설비 및부 대비	생활주변 나무심기	1,300,000 도390,000 군910,000	520,000 군520,000	780,000 도390,000 군390,000	예산 과다 계상
일반	자 사업	시설비 및부 대비	조경시설지 사후관리	52,000	32,000	20,000	"
일반	보조 사업비	시설비 및부 대비	논밭두렁 공동소각	122,774 국3,082 도2,158 군117,534	100,000 군100,000	22,774 국3,082 도2,158 군17,534	"
일반	자 사업	시설비 및부 대비	하수처리장 시설수선비	130,000	130,000	0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사업비와 중복 계상

회계별	과 목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요구액	삭감액	승인액	사 유통
	세세항	목					
일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시가지우울수분리관설치사업 타당성조사	100,000	50,000	50,000	예산 과다 계상
일반	보조사업	시설비	거창도서관 건립 감리비	(66,126)	0	0	부기전환 (감리비→시설비)
수정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	농산물공동 브랜드개발	40,000	40,000	0	캐릭터사업 완료 후 추진 또는 통합추진
특별회계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전인대행업체 손실 보조	15,000	10,000	5,000	예산 과다 계상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자가주차장 설치보조	100,000	50,000	50,000	"
	보조사업	시설비	위천농어촌 상수도사업 감리비	(75,500)	0	0	부기전환 (감리비→시설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부대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432,600)	0	0	부기전환 (감리비→시설비)
일반	기획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이전	대성고등학교 도서관 정보화사업	30,000	30,000	0	신설 거창군립 도서관 활용하는 방안 강구
일반	문화 및 문화재 자체사업	민간이전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 공연지원비	30,000	30,000	0	당초예산 삭감되었던 항목으로 사랑의 티켓 활성화하여 보전
일반	문화 및 문화재 자체사업	민간이전	극단입체 육성 지원비	22,000	22,000	0	당초예산 삭감되었던 항목으로 사랑의 티켓 활성화하여 보전

회계별	과 목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요구액	삭감액	승인액	사 유
	세세항	목					
일반	문화 및 문화재 자채사업	민간 이전	거창 45문중과 관련된 거창사료조사 및 책자발간	60,000	60,000	0	연편록의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검정 절차를 거친 후 연편록을 발간하거나 군사개정판 발간 등 추가계획 수립 후 추진
일반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	일반 운영비	노인건강증진센터연료비	3,215	3,215	0	당초예산 채무과 관사 연료비 활용
일반	도시계획 관리 자채사업	연구 개발비	거창군관리 계획수립을 위한 토지 적성평가 용역	347,940	20,000	327,940	예산 과다계상으로 일부 삭감
일반	업무관리 자채사업	연구 개발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산정 용역	20,000	10,000	10,000	예산 과다계상으로 일부 삭감
일반	관광온천 사업예산	민간 자본 이전	토지구획정리지구내 공공시설 설치보조	160,000	25,000	135,000	예산 절감

IX.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 2002년도 세입·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 세입 : 290,206,129천원
- 세출 : 151,787,783천원
- 이월액(잔액) : 138,418,346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

이월 49,604,088천원, 사고이월 62,263,843천원, 계속비 이월 9,600,04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99,24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151,221천원임

- 2002년도 결산 전반을 보면 군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37,476원으로 재정자립도 24.6%로 전년대비 3.5%가 감소하였으며, 재정력지수 13.7%로 대부분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 예산현액이 전년대비 52.2%나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의 45.8%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사업량 과다에 따른 공사감독의 한계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전면책임 감리제 도입 등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당초 계획한 사업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대책이 요구됨. 특히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효과분석으로 유사사업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기록유지, 자료관리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다소 시행이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후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할 것임
- 세입면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세입예산액 259,92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0,206백만원으로 예산대비 112%이며, 지방세 9,242백만원의 수입으로는 인건비15,538백만원에도 59%정도밖에 충당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물건비를 포함하면 29%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세입증대를 위하여 수익사업개발 및 세외수입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과 특별대책수립이 요망됨.

○ 세출면에서는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조정 투자 통계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적정기준에 의거 군정보고 및 예산서 범위내 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각 항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부채 1,942백만원을 상환하는 행정성과를 거두었으며, 충예산현액의 45.0%인 136,212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14,395백만원이 발생, 특히 연례적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망됨.

○ 기타 부문별

- 농공단지특별회계등 5개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이 89건에 1,654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운영애로와 부실채권화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확보 조치가 필요하고
- 시민운동, 문화.예술, 체육등 관련 보조금이 일정한 기준 없이 pool예산과 실과 예산에서 중복 지원되고 있어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에 대한 적절한 지침 마련 등 대책이 요망됨
- 70-80년대 개발시대 새마을 사업등에 편입된 각종 공공 용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소유권 분쟁등이 예상되므로 권리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됨
-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의 선정과정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도에 사업 이탈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은 후계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저하 시키는 요인과 농촌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특별대책 수립 요망
- 행정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해당분야의 전문

적 지식을 가진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군정 정책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미흡하므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는등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주민여론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